

서식 1

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

청년월세 지원 신청(변경)서 (신청 , 변경)

(3쪽 중 1쪽)

처리기간	별도안내
------	--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세대주와의 관계	전화번호	
	주소			휴대전화	
	주거급여 중복신청 여부	(○, ×)	주거급여 수급여부	(○, ×)	보증기관 (시·군·구)
	지자체 또는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 여부			(○, ×) ※ 월세 수혜 중	전자우편

청년 독립 가족 구성 1)	신청인과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세대주와 동거여부 (미동거사유)	학력· 재학여부	직업
	배우자 관계 ²⁾ ([]법률혼 []사실혼 []사실상 이혼)					
	원가구					

거주 조건 등	주택유형		임차보증금	월세	임차면적	비고 ³⁾ (공동임차인 경우 신청자 지분을 등 기재)
	주택	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다가구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업겸용 단독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중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아파트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립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세대주택	원	원	m ²	
	준주택	<input type="checkbox"/> 오피스텔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시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숙사 <input type="checkbox"/> 노인복지주택	임대차기간	~		
기타	<input type="checkbox"/> 쪽방 <input type="checkbox"/> 여관·여인숙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계약일자		전대차 여부	(○, ×)	

지급 계좌	신청인과의 관계	성명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비고(사유) ⁴⁾
----------	-------------	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통지방법 [] 서면 [] 전자우편(E-mail) [] 문자메시지서비스(SMS) [] 기타 ()

작성방법

- 1) 청년독립가구: 청년, 배우자,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원가구: 청년가구, 1촌이내 직계혈족(부모)
- 2) 해당자에 한함
- 3) 신청인 명의로 계약체결 하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 및 월세이체 내역 자료 첨부, 공동임차인 계약 시 계약서에 지분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
- 4) 청년 본인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,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)가 확인하여 사유를 반드시 기재 / 디딤씨앗통장(CDA)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
- 5) 거주지·계약조건 변경 등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, 신청인·거주조건·지급계좌란만 작성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	확 인 (√ 체크)
<p>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</p> <p>※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활용 목적</p> <p>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청장)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</p> <p>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·재산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(주거급여)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밖에 월세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, 국세(사업자등록정보, 임차보증금 포함)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</p> <p>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1항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(보조금의 중복·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하고,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.</p>	[]

유의 사항	확 인 (√ 체크)
<p>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,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2.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</p> <p>3.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(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)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,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4.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, 주거급여 수혜여부 결정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여부를 결정하며, 월세지원금 지급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.</p> <p>5. 지자체,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에는 수혜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</p> <p>6.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 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.(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적용)</p>	[]

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년이 미혼인 경우: 청년본인 및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○ 청년이 기혼인 경우: 청년, 배우자, 청년의 부·모 및 배우자의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. 소득재산신고서 3.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(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, 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) 5. 건축물대장·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(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) 6.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.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8. 부채 증빙 서류(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, 원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및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,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)
------	---

' 청년월세 지원 ' 지원 서약서

' 청년월세 지원 ' 과 관련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,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유 의 사 항 >

-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(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)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, 부모와 합가, 주택 소유,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,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성명

(서명)